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Actual state Analysis for Residential space of Elderly Nursing Facility

장 혜 원 김 대 희 황 은 경
 Jang, Hye-won* Kim, Dae-hee* Hwang, Eun-Kyuong**

Abstract

The elder population is growing rapidly in Korea nowadays. Therefore, a demand for adaptable installation standard of residential spac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with growth of the elder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actual state by interviewing manager, surveying actual measurement and using draft of Elderly nursing facility which is for senile patients. As a result of the survey for size and facilities, facilities for elderly safety, accommodation per a person and room size per a person are below to standard. Therefore, establishing adaptable design standard is needed which is to make safe and fresh liv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키워드 : 노인요양시설, 거주 공간, 실태조사

Keywords : Elderly Nursing Facility, Residential space, Actual state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aning society)’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 202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맞이한 고령화 현실은 노인 주거, 복지 및 의료 지원 등에 대한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시화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치매, 중풍 등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일반주택보다도 요양시설에 보호를 받는 노인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주거공간을 계획하는데 주생활 공간인 침실, 화장실, 욕실 등과 이와 관련된 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시설 내 주거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정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실 연구원

** 정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실 선임연구원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이론적 고찰은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의 특성 및 현황을 알아보고 관계법령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요양원 중 기존의 10인 미만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과 10인 이상의 시설인 노인요양시설 총 16곳을 대상으로 운영자 면담과 시설 실측 및 도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의 설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 요양시설의 특성 및 현황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 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가능

(출처: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8조)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 21곳, 전라북도 22곳으로 대전 2곳, 울산 4곳, 서울 8곳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 간 시설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도시 보다는 도심 근교에 많은 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은 지역적 위치와 운영의 여건상 도시 근교가 대도시보다 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요양시설의 지역별 현황

시·도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합계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서울	8	3	9	11	3	15	49
부산	13	3	5	10	1		32
대구	8	3		7	3	1	22
인천	6	6	6	6	1	2	27
광주	10	2	2	2			16
대전	2	6	3	7	3	2	23
울산	4	9		6	3		22
경기	21	75	37	25		38	196
강원	13	11	7	16	2	2	51
충북	11	18	1	10	3		43
충남	10	9	11	7		1	38
전북	22	49	7	20		1	99
전남	9	21	2	14	1	1	48
경북	16	28	1	19	1	4	69
경남	15	12	11	17	2	3	60
제주	6	5	1	7	1		20
합계	174	260	103	184	24	70	815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유형으로 실비 노인요양시설이 260곳으로 전체 32%를 차지하고, 입소인원 규모면에서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532곳으로 전체 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3. 요양시설의 규모별 현황

구분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합계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10인 미만	4	38	47	1	1	21	112
30인 미만	10	103	33	2	3	20	171
30인 이상	160	119	23	181	20	29	532
합계	174	260	103	184	24	70	815

2. 노인요양시설의 관계법령 검토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법은 크게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을 들 수 있다. 두 법은 2008년 7월 시행될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노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이 2008월 1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크게 노인의료복지에 대한 구분과 시설기준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전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실비·유료 요양시설과 무료·실비·유료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무료·실비·유료의 구분을 없애고, 입소자 인원에 따

라 기존의 10인 미만의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요양시설은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시설로 구분하였다.

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2008.4 시행)

현행법령	개정법령(2008.4.4 시행)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노인요양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유료노인 전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둘째, 1인당 연면적에 대한 규정이 생겨나고, 침실의 경우 입소자 1인당 면적이 5.0㎡에서 6.6㎡으로 증가하였다.

표 5. 노인의료시설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법령	기준
개정전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5인 이상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
현행 (2008.1.28)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간 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 확보)

셋째, 시설 기준의 명칭과 의무설치공간이 추가되었다. 시설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인 경우 요양시설 기준과 동일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10미만 시설과 거의 유사하나 요양보호사실 및 자원봉사자실 과 물리작업치료실 및 프로그램실이 추가되었다.

또한, 실명도 변경되었는데 개정 전 거실이란 용어를 침실로 변경하여 타 법령과 용어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또한 생활지도원실이 요양보호사실로 간호사실이 의료 및 간호사실로, 오락실이 프로그램실로 변경되었다.

표 6. 노인요양시설 기준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30명이상	○	○	○	○	○	○	○	○	○	○	○	○
30명미만 10명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III. 노인요양시설의 실태조사 분석

1. 조사개요

지역별 분포 현황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에 따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총 16곳을 선정하였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까지 신고된 시설로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1곳, 강원 4곳, 충청 2곳, 전라1곳으로 구성된다. 조사기간은 2008년 1월에서 2008년 2월로, 이 기간 동안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자와의 면담과 요양시설의 실측조사, 도면을 통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7.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위치	신고일	입지	현원/정원	직원수	건물층수 (지상/지하)	건축면적 (㎡)	연면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A	경기	2006.10	근교	9/15	5	2/0	131.1	182.13	
	B	전북	2006.08	전원	5/10	3	1/0	99.36	99.36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 30인 미만	C	경기	2003.11	근교	13/8	3	1/0	264	1211
		D	경기	2005.05	전원	10/10	3	2/0	333.22	333.22
		E	경기	2006.05	근교	22/23	6	1/0	280	280
		F	전남	2005.07	전원	29/29	3	1/0	419.75	419.75
		G	전남	2005.08	전원	29/35	7	4/0	131.13	509.42
	30인 이상	H	강원	1999.01	전원	104/105	58	3/1	7,625	2,741
		I	강원	2002.10	전원	78/88	42	4/1	513.8	1944.11
		J	충남	2005.1.1	도시	47/60	17	4/0	1186.31	1728.35
		K	경기	2006.12	근교	32/32	16	2/0	368.56	554.94
		L	서울	2006.05	도시	165/165	88	5/2	1041.86	5513.87
M	경기	2006.02	전원	50/44	18	3/1	2366.06	5293.20		
N	서울	1983.02	전원	67/70	31	1/1	886.9	1167.4		
O	인천	1990.12	근교	170/144	44	6/1	639.39	3124.93		
P	경기	2004.12	근교	145/128	72	3/1	1194.36	4762.56		

2. 노인요양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단위공간의 설치현황

2008년 1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시설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침실과 직원 및 비상대해대

비시설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으며, 사무실과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중 택일,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 중 택일, 화장실과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중 택일 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요양시설 중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무실과 요양보호자실, 자원봉사실 중 한 곳, 세면장 및 목욕실과 세탁장 및 세탁건조장을 중 한 곳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모든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8을 보게 되면 많은 시설들이 프로그램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거실이나 휴게실에서 프로그램을 대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일수록 입소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등을 거실에서 함께 행하고, 목욕실 및 세탁실을 하나에 공간에서 공유하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침실

노인 복지법에 따른 설비기준으로 입소자 1인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 1실당 정원은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A, B, C, D, E, F는 1실당 4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규모 시설에 가까울수록 최고 1실당 6인까지 정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설을 방문한 결과 5인 이상이 정원인 방은 실제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해 인원수를 줄여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의 침실은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침대실과 온돌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침실 내 화장실이 존재 하지 않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대규모 시설일수록 침실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입소자 노인의 이동 거리를 줄여 거동시 사고를 줄이고 있다.

표 8. 개별공간의 설치현황

구분	개별공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시설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기준	A	B	기준	C	D	E	F	G	기준	H	I	J	K	L	M	N	O	P
법적 설치 공간	침실	●	●	●	●	●	●	●	●	●	●	●	●	●	●	●	●	●	●	●
	사무실			●		●	●			●	●	●	●	●	●	●	●	●	●	●
	요양보호사실					●	●				●	●	●	●	●	●	●	●	●	●
	자원봉사자실	●	-					●			●	●	●	●	●	●	●	●	●	●
	의료 및 간호사실			●	●	●					●	●	●	●	●	●	●	●	●	●
	물리(작업)치료사실	●	-	●	●				●	●	●	●	●	●	●	●	●	●	●	●
	프로그램실			●							●	●	●	●	●	●	●	●	●	●
	식당 및 조리실	●	●	●	●	●	●	●	●	●	●	●	●	●	●	●	●	●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	-	-	-	●	●	●	●	●	●	●	●	●	●	●	●
	화장실		●	●	●	●	●	●	●	●	●	●	●	●	●	●	●	●	●	●
	세면장 및 목욕실	●	●	●	●	●	●	●	●	●	●	●	●	●	●	●	●	●	●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	●	●	●	-	●	●	●	●	●	●	●	●	●	●	●
추가 설치 공간	강당	-									●		●		●		●		●	
	휴게실	-		●			●	●			●	●	●	●		●	●	●	●	
	종교공간	-							●											
	광고	-							●		●		●				●	●	●	
	환자실	-		●					●	●						●	●	●	●	
런넨실	-										●	●		●						
기타	-								●	●	●	●		●		●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9. 침실공간의 특성

시설명	법적 기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인원/실	4인 이하	2/1 3/1	2/1 3/1	3/1	2/1 3/1	2/1 3/1	2/1 3/1	5/1	3/1 4/1 5/1 6/1	1/1 2/1 3/1 5/1	2/1 3/1 4/1 5/1	2/1 3/1 4/1 5/1	2/1 3/1 4/1 5/1	4/1 5/1 6/1	2/1 3/1 4/1 5/1 6/1 7/1 8/1	2/1 3/1 4/1 5/1 6/1	5/1 6/1
객실양식	-	온/침	온/침	온	온	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온/침
면적/인(㎡)	6.6㎡ 이상	● 7.7	X 3.3	X 5.2	X 6.4	X 5.8	X 6.1	X 4.5	X 3.6	X 6.3	X 5.3	● 8.7	X 5.1	X 5.4	X 3.7	● 6.9	X 5.8
비고	-	-	-	-	화	-	-	화	-	화	화	-	화	화	화	화	화

● : 적합 X : 부적합
 온 : 온통 침 : 침대 화 : 화장실

침실의 편의시설에서 노인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7곳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끄럼방지재 설치의 그 기준이 미흡하여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노인들의 골절 사고의 원인을 방치하고 있다.

표 10. 침실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법적 기준	A	B	C	D	E	F	G	H
비상호출	●	X	X	X	X	X	X	X	●
미끄럼방지	●	X	○	X	○	○	○	○	●
출입 유효폭	0.8m 이상	X	X	X	●	●	●	X	●
문 형태	-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문턱 높이	제거	X	●	X	X	●	X	●	●
스위치높이	0.8m이상 1.2m 이하	●	●	X	●	●	●	●	●

시설명	법적 기준	I	J	K	L	M	N	O	P
비상호출	●	X	X	X	●	○	●	●	●
미끄럼방지	●	●	●	●	●	○	○	○	○
출입 유효폭	0.8m 이상	●	●	●	●	●	●	●	●
문 형태	-	여/미	미	여	미	미	여	미	미
문턱 높이	제거	●	●	●	●	●	X	●	●
스위치높이	0.8m이상 1.2m 이하	●	●	X	X	●	●	X	X

● : 적합/설치 ○ : 보통 X : 부적합
 여 : 여단이 미 : 미단이

3) 욕실 및 화장실

화장실과 욕실 및 샤워실의 설비기준은 편의증진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실과 욕실 및 샤워실은 입소자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골절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미끄럼방지재에 많이 소홀하다. 또한 비상호출기 설치도 많은 요양 시설에 설치하고 있지 않다. 화장실이나 욕실의 출입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입소자를 위해 미단이 형태와 접이문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많은 시설에서 여단이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 누웠을때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명시되어 있지만 깊이가 50cm이상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욕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험요소를 배제했다고 볼 수 없다.

표 11. 욕실 및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법적 기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화장실	출입문 형태	미/접	여	여	미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미	미	여	여	미
	형태	양변기 혹은 바닥부착형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손잡이	수평 및 수직 손잡이	●	○	○	○	X	●	●	●	○	●	●	●	●	●	○	●
욕실 및 샤워실	미끄럼방지	설치	●	○	●	●	○	○	○	●	●	●	●	●	○	○	○	○
	단차	제거	X	●	X	X	●	X	X	X	●	X	●	●	●	X	●	●
	유효폭	0.8m 이상	X	X	●	X	X	●	●	●	●	●	X	●	●	X	●	●
	출입문 형태	미/접/여	여	여	미	여	X	여	여	여	여	여	여	미	여	여	여	여
	핸드레일	/수직 손잡이	●	X	X	●	X	X	X	●	X	●	X	●	○	-	X	●
	비상호출기	설치	●	●	X	X	●	●	●	●	X	X	X	●	●	●	●	●
	세면대	*	○	●	●	●	●	●	●	●	●	●	●	●	●	●	●	●
샤워기	***	○	●	●	●	●	●	X	●	●	●	●	●	●	●	●	●	
욕조	***	X	X	X	●	X	X	●	●	●	X	X	●	X	●	●	●	

● : 적합/설치 ○ : 일부설치 X : 부적합
 여 : 여단이 미 : 미단이 접 : 접이문 양 : 양변기 바 : 바닥부착형
 *세면대 : 바닥면에서 하단이 높이 0.65m 이상, 상부의 높이 : 0.8m
 **샤워기 : 사용하기 편리한 레버식 등의 수도꼭지
 ***욕조 :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

4) 건물의 주출입구 및 현관

건물의 주출입구 및 현관에서는 유효폭과 출입문의 형태는 대부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경고 블록과 핸드레일의 설치는 미비하게 나타나 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출입문의 형태는 대부분의 시설이 여단이문의 형식을 취하고, 경사로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

표 12. 건물 주출입구 및 현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설명	법적 기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단차	2cm 이하	X	●	X	X	●	●	X	●	●	●	●	●	●	●	X	●	●
유효폭	0.8m 이상	●	●	●	●	●	●	X	●	●	●	●	●	●	●	●	●	●
활동공간	전면유효거리 1.2m 이상	X	●	X	X	X	●	X	●	●	●	X	●	●	●	●	●	
출입문 형태	회전문 제외	●	●	●	●	●	●	●	●	●	●	●	●	●	●	●	●	
경고블럭	설치	X	X	X	X	X	X	X	X	X	●	●	X	X	X	X	X	
경사로	1/12 이하	●	●	●	●	-	●	●	●	●	●	X	●	●	X	●	●	
핸드레일	설치	X	X	X	X	-	X	X	X	●	●	X	X	●	X	●	●	

● : 적합/설치 X : 부적합/미설치

5) 수평이동공간(복도 및 현관)

수평이동공간에 있어 단차와 보행장애물 제거는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지만, 미끄럼방지재의 마감과 손잡이 설치는 많은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손잡이의 경우 바닥에서의 높이, 벽과 이격거리, 지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형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각각의 시설에 따라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표 13. 수평이동공간(복도 및 통로)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법적 기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단차	없음	●	●	●	●	●	●	●	●	●	●	●	●	●	●	●	●
보행 장애물	제거	●	●	●	●	●	●	●	●	●	●	●	●	●	●	●	●
미끄럼 방지	설치	X	●	X	X	●	●	●	●	●	●	X	●	●	●	●	●
핸드 레일	높이 0.8m-0.9m이하	X	●	X	●	●	X	●	●	●	X	X	X	●	●	●	●
유효폭	1.2m	●	●	●	●	X	●	X	●	●	●	●	●	●	●	●	●
비고	거	거	거	복	거	거	거	거	거	복	복	복	복	복	복	복	복

● : 적합 X : 부적합 - : 시설존재하지 않음
 거 : 거실중심의 소규모시설 복 : 복도 내 휴게공간설치

6) 수직이동공간

A, B, D, E, F는 건물이 1층으로 되어 있어 수직이동공간의 해당이 없으며, N도 1층 시설로 구성되어 승강기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다. K의 승강기의 바닥면적, 출입문의 유효폭과 손잡이 부분이 기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계단의 유효폭과 점자 블럭 설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표 14. 수직이동공간 편의시설 현황

시설명	기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유효폭	1.2m이상	-	-	●	-	-	-	X	X	X	●	●	X	●	●	●	X
계단	디딤판 너비	-	-	●	-	-	-	●	X	●	●	●	●	X	●	●	●
	높이	-	-	●	-	-	-	●	●	●	●	●	●	X	●	●	X
마감 재질	미끄럼 방지재	-	-	●	-	-	-	●	●	●	●	●	●	●	●	●	●
손잡이	설치	-	-	●	-	-	-	●	●	●	●	●	●	●	●	●	●
바닥 면적	1.1*1.35m 이상	-	-	-	-	-	-	●	●	●	●	X	●	●	-	●	●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	-	-	-	-	-	●	●	●	●	X	●	●	-	●	●
	손잡이	-	-	-	-	-	-	●	●	●	●	X	X	●	-	●	●
되열림 장치	설치	-	-	-	-	-	-	●	●	●	●	●	●	●	-	●	●
점자 블럭		-	-	-	-	-	-	X	X	X	●	●	X	●	-	X	X

● : 적합 X : 부적합 - : 시설존재하지 않음 *입소자 이용안함

(7) 외부공간

외부공간은 주차장과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벤치 등의 휴식 공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중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용되는 주차장은 양호하였다. 대규모 시설일수록 외부공간을 이용해 운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15. 외부공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주차장	○	X	●	●	X	●	●	●	●	●	●	●	●	●	●	●
단지내보도	-	●	○	●	●	●	●	●	●	●	●	●	●	●	●	●
산책로	X	●	●	●	●	●	●	●	●	○	●	○	●	●	X	●
벤치	●	●	X	●	X	●	●	●	●	●	●	●	●	●	X	●

●:이용에충분함 ○: 보통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IV. 결론

16개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계획현황 및 편의시설 이용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법으로 1인당 침실의 면적과 1실당 정원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상황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실당 4인 이하, 1인당 침실 면적 6.6㎡이상으로 운영하려면 앞으로 시행하게 될 규정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관련법규의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의 기능과 수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 중 욕실 및 화장실에 대한 면적의 기준이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생활환경의 편차가 생긴다. 이에 대해 관련법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은 대체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적절히 설치되었으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편의시설인 침실과 욕실 및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핸드레일의 규격이 관련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특성과 노인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명확한 설계기준의 수립의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최보선 외 1인, 사례분석을 통한 노인주거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6권 2호, 1996
2.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